

cpk1.10

人權政策資料

# 유엔拷問防止協約

— 大韓民國 最初報告書 —

여기에 실린 報告書는 유엔拷問防止  
協約 第19條에 따라 大韓民國이 유엔에  
제출한 것임.

人權政策資料  
유엔拷問防止協約  
— 大韓民國 最初報告書 —

cpk1.10

法 務 部

人權政策資料

# 유엔拷問防止協約

— 大韓民國 最初報告書 —

여기에 실린 報告書는 유엔拷問防止  
協約 第19條에 따라 大韓民國이 유엔에  
제출한 것임.

法 務 部

## 發 刊 辭

文民政府의 出帆과 함께, 政府는 司法制度를 포함한 政治·經濟·社會·文化등 모든 分野에서 새로운 價値秩序 確立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人權과 관련하여도 決然한 意志를 가지고 民主的 制度와 慣行을 정착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유엔拷問防止協約에 가입하여 政府의 人權伸張意志를 국내외에 闡明하였으며 國際的인 人權伸張努力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유엔拷問防止協約은拷問이 人間의 尊嚴性和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을 侵害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加入當事國에게 效果的인 立法·司法·行政的 措置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拷問防止를 위하여 加入當事國이 취한 措置는 동 協約 第19條의 規定에 따라 定期的으로 유엔에 報告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따라 最初報告書를 유엔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 책자에 실린 大韓民國 最初報告書는拷問防止를 위한 우리나라의 立法的·制度的 裝置와 함께 政府의 諸般努力을 유엔의 指針에 따라 概括的으로 照明하고 있습니다. 또한拷問防止協約에 대한 體系的 理解를 위하여拷問防止協約 全文과 逐條解說, 유엔拷問防止宣言(1975)을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資料集이 政府의 政策資料로 활용되고, 大學과 研究機關등에서도 參考資料로 널리 이용되어 制度와 慣行의 改善을 통하여 人權伸張을 이룩하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995년 12월

法 務 部 長 官

安 又 葛

拷問 및 기타 殘酷한, 非人道的 또는 屈辱的

處遇나 刑罰禁止協約

大韓民國 最初報告書

序 文 .....	43
第1部 一般的事項 .....	46
第2部 協約 第1部 各條項關聯情報 .....	70
第2條 .....	70
第3條 .....	82
第4條 .....	85
第5條 .....	93
第6條 .....	94
第7條 .....	100
第8條 .....	103
第9條 .....	105
第10條 .....	107
第11條 .....	115
第12條 .....	118
第13條 .....	119
第14條 .....	124
第15條 .....	127
第16條 .....	130

結 論

拷問防止協約 逐條解說

第1部：實體規定 .....	137
第1條 .....	137
第2條 .....	149
第3條 .....	151
第4條 .....	157
第5條 .....	159
第6條 .....	163
第7條 .....	166
第8條 .....	170
第9條 .....	172
第10條 .....	174
第11條 .....	176
第12條 .....	177
第13條 .....	178
第14條 .....	180
第15條 .....	182
第16條 .....	183
第2部：施行規定 .....	186
第17條 .....	187
第18條 .....	192
第19條 .....	193
第20條 .....	198

第21條 .....	202
第22條 .....	205
第23條 .....	208
第24條 .....	209
第3部：附屬規定 .....	209
第25條 .....	209
第26條 .....	210
第27條 .....	210
第28條 .....	210
第29條 .....	211
第30條 .....	212
第31條 .....	213
第32條 .....	214
第33條 .....	214
附 錄	
I. 最初報告書 作成指針 .....	218
II. 유엔拷問防止宣言 .....	224

韓國政府 駐日大使館 法律顧問  
 駐日大使館 法律顧問  
 駐日大使館 法律顧問  
 駐日大使館 法律顧問  
 駐日大使館 法律顧問

1984. 12. 10. 日本駐日大使館  
 1987. 8. 28. 駐日大使館  
 1992. 1. 1. 駐日大使館  
 1998. 2. 2. 駐日大使館

拷問 및 기타殘酷한, 非人道的 또는 屈辱的  
處遇나 刑罰禁止協約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1984. 12. 10. 유엔總會 採擇
- 1987. 6. 26. 效力發生
- 1995. 1. 9. 大韓民國 加入
- 1995. 2. 8. 大韓民國 發效

## I. 第1部 實體規定

第1條~第16條

## II. 第2部 施行規定

第17條~第24條

## III. 第3部 附屬規定

第25條~第33條

##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

본 협약 당사국들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제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제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제 권리가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연합헌장, 특히 제55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고,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유의하며,

1975년 12월 9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던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로부터의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에도 유의하고,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금지를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더욱 효과적이 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부

#### 제 1조

1. 본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는 용어는 개인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 또는 자백을 얻어내고 그 개인 또는 제3자가 행하였거나 행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Consider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ognition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Recognizing* that those rights derive from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Considering* the obligation of States under the Charter, in particular Article 55, to promote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Having regard* to article 5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rticle 7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oth of which provide that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Having regard also* to the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9 December 1975,

*Desiring* to make more effective the struggle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roughout the world,

*Have agreed as follows:*

## PART I

### Article 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torture" means any act by which severe pain or suffering, whether physical or mental, is intentionally inflicted

행위에 대하여 그 개인을 처벌하거나 그 개인 또는 제3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근거한 여하한 이유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공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이 또는 이러한 사람의 교사에 의하거나 동의 또는 묵인하에 그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 및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것은 합법적인 제재조치로부터 야기되고 이에 고유한 또는 이에 부수적인 고통 또는 피해를 포함하지 않는다.

2. 본 조항은 적용범위가 더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수 있는 여하한 국제법규 또는 국내입법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제 2 조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여타 조치를 취한다.
2. 전쟁상태 또는 전쟁의 위협,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상태와 같은 여하한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인용될 수 없다.
3. 상급관리 또는 공적인 기관으로부터의 명령은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인용될 수 없다.

## 제 3 조

1. 어느 당사국도 개인을 그가 고문을 받을 위협이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다.
2. 그러한 근거의 존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관기관은 적절하다면 관련 국가에서의 심한, 극악한 또는 대량의 인권위반의 고질적인 존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on a person for such purposes as obtaining from him or a third person information or a confession, punishing him for an act he or a third person has committed or is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or intimidating or coercing him or a third person, or for any reason based on discrimination of any kind, when such pain or suffering is inflicted by or at the instigation of or with the consent or acquiescence of a public official or other person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 It does not include pain or suffering arising only from, inherent in or incidental to lawful sanctions.

2. This article is without prejudice to any international instrument or national legislation which does or may contain provisions of wider application.

#### Article 2

1. Each State Party shall take effective legislative, administrative, judicial or other measures to prevent acts of torture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2. No exceptional circumstances whatsoever, whether a state of war or a threat of war, internal political instability or any other public emergency, may be invoked as a justification of torture.

3. An order from a superior officer or a public authority may not be invoked as a justification of torture.

#### Article 3

1. No State Party shall expel, return("refouler") or extradite a person to another State where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he would be in danger of being subjected to torture.

2.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there are such grounds,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considerations including, where applicable, the existence in the State concerned of a consistent pattern of gross, flagrant or ma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 제 4 조

1. 각 당사국은 모든 고문행위가 자국형법에 의하여 범죄가 됨을 보장한다. 고문의 미수 및 고문에의 공모 또는 가담을 구성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범죄가 된다.
2. 각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들이 그 심각성을 고려한 적절한 형벌에 의하여 처벌되도록 한다.

#### 제 5 조

1. 각 당사국은 아래의 경우에 제4조에서 언급된 범죄에 대한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범죄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상에서 발생한 경우  
나. 범죄혐의자가 자국민인 경우  
다. 피해자가 자국민이며 자국의 관할권 행사가 적절하다고 간주할 경우
2. 각 당사국은 범죄혐의자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 있거나 본조 1항에 언급된 어느 국가에도 동인을 제8조에 따라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본 협약은 국내법에 따라 행사된 어떠한 형사관할권도 배제하지 않는다.

#### Article 4

1.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all acts of torture are offences under its criminal law. The same shall apply to an attempt to commit torture and to an act by any person which constitutes complicity or participation in torture.

2. Each State Party shall make these offences punishable by appropriate penalties which take into account their grave nature.

#### Article 5

1. Each State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its jurisdiction over the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 4 in the following cases:

(a) When the offences are committed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or on board a ship or aircraft registered in that State;

(b) When the alleged offender is a national of that State;

(c) When the victim is a national of that State if that State considers it appropriate.

2. Each State Party shall likewise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its jurisdiction over such offences in cases where the alleged offender is present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and it does not extradite him pursuant to article 8 to any of the State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This Convention does not exclude any criminal jurisdiction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internal law.

#### 제 6 조

1. 자국 영토내에 제4조에서 언급된 범죄혐의자가 소재하는 당사국은 입수 가능한 정보의 검토후 상황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납득되면 즉시 그를 구금하거나 그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법적조치를 취한다. 구금이나 다른 법적조치는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취하여지며 형사 또는 인도절차가 시작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동안만 계속될 수 있다.
2. 그러한 국가는 즉시 사실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3. 본 조 1항에 따라 구금중인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동인의 국적국의 적절한 대표와 또는 무국적자일 경우 그가 일상적으로 체재하는 국가의 대표와 즉각적인 연락을 취함에 있어 도움을 받는다.
4. 일 국가가 본 조에 따라 개인을 구금하였을 때에는 동인의 구금사실 및 동인의 억류를 정당화하는 상황을 제5조 1항에 언급된 국가들에게 즉시 통보한다. 본 조 2항에 규정된 예비조사를 실시한 국가는 그 결과를 즉각 상기 국가들에게 통보하고 관할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도 표명한다.

#### 제 7 조

1.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 제4조에 언급된 범죄의 혐의자가 소재하는 당사국은 제5조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 동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기소를 위하여 이 사건을 소관기관에 회부한다.
2. 이 기관은 자국법하에서 중대한 성격의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을 내린다. 제5조 2항에서 언급된 경우에 기소 또는 선고를 위하여 요구되는 증거의 기준은 어떤 경우에도 제5조 1항에서 언급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덜 엄격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
3. 제4조에 언급된 범죄와 관련하여 소송절차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소송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한 처우를 보장받는다.

## Article 6

1. Upon being satisfied, after an examination of information available to it, that the circumstances so warrant, any State Party in whose territory a person alleged to have committed any offence referred to in article 4 is present shall take him into custody or take other legal measures to ensure his presence. The custody and other legal measures shall be as provided in the law of that State but may be continued only for such time as is necessary to enable any criminal or extradition proceedings to be instituted.

2. Such State shall immediately make a preliminary inquiry into the facts.

3. Any person in custody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assisted in communicating immediately with the nearest appropriate representative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or, if he is a stateless person, with the representative of the State where he usually resides.

4. When a State, pursuant to this article, has taken a person into custody, it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fact that such person is in custody and of the circumstances which warrant his detention. The State which makes the preliminary inquiry contemplat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promptly report its findings to the said States and shall indicate whether it intends to exercise jurisdiction.

## Article 7

1. The State Party in the territory under whose jurisdiction a person alleged to have committed any offence referred to in article 4 is found shall in the cases contemplated in article 5, if it does not extradite him, submit the case to its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 of prosecution.

2. These authorities shall take their decision in the same manner as in the case of any ordinary offence of a serious natur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In the cases referred to in article 5, paragraph 2, the standards of evidence required for prosecution and conviction shall in no way be less stringent than those which apply in the cases referred to in article 5, paragraph 1.

3. Any person regarding whom proceedings are brought in connection with any of the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 4 shall be guaranteed fair treatment at all stages of the proceedings.

## 제 8 조

1. 제4조에 언급된 범죄는 당사국들간에 존재하는 모든 범죄인 인도조약상에 인도 가능한 범죄로서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국들은 상호간에 체결되는 모든 범죄인 인도조약에 그러한 범죄들을 인도 가능한 범죄로서 포함시키도록 조치한다.
2.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일 당사국이 자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타 당사국으로부터 인도 요청을 받을 경우, 동 협약을 그러한 범죄들에 관한 범죄인 인도의 법적근거로서 간주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는 요청받은 국가의 법이 제시하는 여타 조건에 따라야 한다.
3.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국가들이 아닌 당사국들간에는 요청받은 국가의 법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그러한 범죄들을 인도 가능한 범죄로서 인정한다.
4. 그러한 범죄들은 당사국들간의 인도목적에 위하여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서는 물론 제5조 1항에 따라 관할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영토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취급된다.

## 제 9 조

1. 당사국들은 제4조에서 언급된 범죄에 관한 형사상 절차와 관련, 동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재량하에 있는 모든 증거의 제공을 포함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상호간에 제공한다.
2. 당사국들은 상호간에 존재할 수 있는 사법공조에 관한 모든 조약에 따라서 본 조 1항의 의무를 수행한다.

Article 8

1. The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 4 shall be deemed to be included as extraditable offences in any extradition treaty existing between States Parties. States Parties undertake to include such offences as extraditable offences in every extradition treaty to be concluded between them.

2. If a State Party which makes extradition conditional on the existence of a treaty receives a request for extradition from another State Party with which it has no extradition treaty, it may consider this Convention as the legal basis for extradition in respect of such offences. Extradition shall be subject to the other conditions provid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State.

3. States Parties which do not make extradition conditional on the existence of a treaty shall recognize such offences as extraditable offences between themselves subject to the conditions provid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State.

4. Such offences shall be treated, for the purpose of extradition between States Parties, as if they had been committed not only in the place in which they occurred but also in the territories of the States required to establish thei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paragraph 1.

Article 9

1. States Parties shall afford one another the greatest measure of assistance in connection with criminal proceedings brought in respect of any of the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 4, including the supply of all evidence at their disposal necessary for the proceedings.

2. States Parties shall carry out their obligations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 conformity with any treaties on mutual judicial assistance that may exist between them.

제 10 조

1. 각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체포, 억류 또는 수감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구금, 심문 또는 처우에 관련될 수 있는 민간 또는 군의 법집행 인사, 의학계 인사, 공무원 및 기타 인사들의 훈련에 고문금지에 관한 교육 및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이러한 인사들의 임무 및 직능에 관하여 발하여진 규정 또는 지침에 고문의 금지를 포함시킨다.

제 11 조

각 당사국은 여하한 경우의 고문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의 여하한 형태의 체포, 억류 또는 수감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구금 및 처우에 관한 제도와 아울러 심문규칙, 지침, 방법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제 12 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 고문이 행하여졌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모든 경우에 소관기관이 즉각적이고 공평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보장한다.

제 13 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모든 개인이 소관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소관기관에 의해 즉각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동 사건에 대하여 조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고소인 및 증인들이 고소 또는 증거제시의 결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모든 부당한 처우 또는 협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 Article 10

1.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education and information regarding the prohibition against torture are fully included in the training of law enforcement personnel, civil or military, medical personnel, public officials and other persons who may be involved in the custody, interrogation or treatment of any individual subjected to any form of arrest, detention or imprisonment.

2. Each State Party shall include this prohibition in the rules or instructions issued in regard to the duties and functions of any such person.

#### Article 11

Each State Party shall keep under systematic review interrogation rules, instructions, methods and practices as well as arrangements for the custody and treatment of persons subjected to any form of arrest, detention or imprisonment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with a view to preventing any cases of torture.

#### Article 12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proceed to a promp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wherever there is reasonable ground to believe that an act of torture has been committed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 Article 13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any individual who alleges he has been subjected to torture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has the right to complain to, and to have his case promptly and impartially examined by, its competent authorities. Step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the complainant and witnesses are protected against all ill-treatment or intimidation as a consequence of his complaint or any evidence given.

#### 제 14 조

1. 각 당사국은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조치를 받으며, 가능한 한 충분한 원상회복의 수단을 포함한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자국의 법체계내에서 보장한다. 고문행위의 결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부양가족이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2.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국내법하에서 인정되는 피해자 또는 여타 사람들의 보상요구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 15 조

각 당사국은 고문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여하한 진술도 고문 혐의자에 대한 소송에서 그 진술이 행하여 졌다는 증거로서 원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증거로서 원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한다.

#### 제 16 조

1. 각 당사국은 제1조에 규정된 고문에 미치지 않는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이 공무원 또는 공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에 의하거나 또는 이러한 사람의 교사에 의하거나 또는 그들의 동의 또는 묵인하에 행하여질 때에는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 그러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포함된 의무는 고문에 관하여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형태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관하여서도 적용된다.
2. 본 협약의 규정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금지하거나 범죄인 인도 또는 추방에 관련되는 여타 국제법규 또는 국내법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 Article 14

1.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in its legal system that the victim of an act of torture obtains redress and has an enforceable right to fair and adequate compensation, including the means for as full rehabilitation as possible. In the event of the death of the victim as a result of an act of torture, his dependants shall be entitled to compensation.

2.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ffect any right of the victim or other persons to compensation which may exist under national law.

#### Article 15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any statement which is established to have been made as a result of torture shall not be invoked as evidence in any proceedings, except against a person accused of torture as evidence that the statement was made.

#### Article 16

1. Each State Party shall undertake to prevent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other acts of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which do not amount to torture as defined in article 1, when such acts are committed by or at the instigation of or with the consent or acquiescence of a public official or other person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 In particular,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articles 10, 11, 12 and 13 shall apply with the substitution for references to torture of references to other forms of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2.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ny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 or national law which prohibits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r which relates to extradition or expulsion.

## 제 2 부

### 제 17 조

1.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가 설립되어 아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높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동인들은 개인자격으로 근무한다. 전문가는 공평한 지역적 배분 및 법적 경험 소유 인사들의 참여 유용성을 고려하여 당사국들에 의하여 선출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들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설립된 인권이사회의 위원으로서 고문방지위원회에 봉사기를 원하는 인사로서 지명된 사람의 유용성에 유의한다.
3. 위원회의 위원선출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하여 개최되는 격년주기의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과반수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4. 최초의 선거는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각 선거일 최소 4개월 전에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3개월 이내에 후보를 지명하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렇게 지명된 후보자의 명단을 지명국가 표시와 함께 알파벳순으로 준비하여 당사국에 제출한다.

## PART II

### Article 17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Committee against Torture(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which shall carry out the functions hereinafter provided.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ten experts of high moral standing and recognized competenc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who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The experts shall be elected by the States Parties,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to the usefulness of the participation of some persons having legal experience.

2.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from a list of persons nominated by States Parties. Each State Party may nominate one person from among its own nationals. States Parties shall bear in mind the usefulness of nominating persons who are also member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who are willing to serve on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3. Elections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held at biennial meetings of States Parties conven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t those meetings, for which two thirds of the States Parties shall constitute a quorum, the persons elected to the Committee shall be those who obtain the largest number of votes and an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s of the representatives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4. The initial election shall be held no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t least four months before the date of each election,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ddress a letter to the States Parties inviting them to submit their nominations within three months. The Secretary-General shall prepare a list in alphabetical order of all persons thus nominated, indicating the State Parties which have nominated them, and shall submit it to the States Parties.

5.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모든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중 5인의 임기는 2년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후 즉시 본 조 3항에 언급된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여타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동 위원을 임명한 당사국은 동인의 잔여 임기동안 근무할 수 있는 다른 전문가를 전 당사국 과반수의 동의를 조건으로 지명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이 동 지명내용을 각 당사국에 통보한 후 전 당사국의 과반수가 6개월 이내에 부정적으로 답변하지 않으면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전 당사국은 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 18 조

1. 위원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자체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가. 의사정족수는 위원 6인으로 한다.

나.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본 협약상 위원회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및 시설을 제공한다.

4.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최초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최초의 이 후 위원회의 절차규칙에 규정된 시기에 회의를 개최한다.

5.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four years. They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if renominated. However, the term of five of the members elected at the first election shall expire at the end of two years; immediately after the first election the names of these five members shall be chosen by lot by the chairman of the meeting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6. If a member of the Committee dies or resigns or for any other cause can no longer perform his Committee duties, the State Party which nominated him shall appoint another expert from among its nationals to serve for the remainder of his term,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majority of the State Parties. The approval shall be considered given unless half or more of the States Parties respond negatively within six weeks after having been inform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proposed appointment.

7. States Parties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expenses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while they are in performance of Committee duties.

#### Article 18

1. The Committee shall elect its officers for a term of two years. They may be re-elected.

2.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its own rules of procedure, but these rules shall provide, *inter alia*, that:

(a) Six members shall constitute a quorum;

(b) Decisions of the Committee shall be made by a majority vote of the members present.

3.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ovide the necessary staff and facilities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under this Convention.

4.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convene the initial meeting of the Committee. After its initial meeting, the Committee shall meet at such times as shall be provided in its rules of procedure.

5. 전 당사국은 본 조 3항에 따라 직원 및 시설을 위한 경비 등 국제연합이 부담한 비용을 국제연합에 변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당사국 및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 19 조

1. 전 당사국은 본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내에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취하여야 온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그 이후 전 당사국은 자국이 취한 모든 새로운 조치에 관한 추가보고서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여타 보고서를 4년마다 제출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동 보고서들을 전 당사국에 송부한다.

3. 각 보고서는 위원회에 의하여 검토되며, 위원회는 보고서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이러한 의견들을 관련 당사국에 전달한다. 관련 당사국은 이에 대한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작성된 연례보고서에 관련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의견과 함께 본 조 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를 포함시킬 것을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관련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본 조 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사본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 제 20 조

1. 위원회가 어느 당사국의 영토내에서 고문이 조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믿을 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그 당사국으로 하여금 이 정보를 조사하는데 협조토록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에 관한 견해를 제시한다.



5. The States Parties shall be responsible for expens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holding of meetings of the States Parties and of the Committee, including reimbursement to the United Nations for any expenses, such as the cost of staff and facilities, incurred by the United Nations pursuant to paragraph 3 of this article.

#### Article 19

1. The States Parties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reports on the measures they have taken to give effect to their undertakings under this Convention, within one year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e State Party concerned. Thereafter the States Parties shall submit supplementary reports every four years on any new measures taken and such other reports as the Committee may request.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the reports to all States Parties.

3. Each report shall be considered by the Committee which may make such general comments on the report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and shall forward these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That State Party may respond with any observations it chooses to the Committee.

4. The Committee may, at its discretion, decide to include any comments made by i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ogether with the observations thereon received from the State Party concerned, in its annual report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If so requested by the State Party concerned, the Committee may also include a copy of the report submitted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 Article 20

1. If the Committee receives reliable information which appears to it to contain well-founded indications that torture is being systematically practised in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the Committee shall invite that State Party to co-operate in the examination of the information and to this end to submit observations with regard to the information concerned.

2.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견해와 아울러 여타 입수 가능한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비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즉각 위원회에 보고할 1인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3. 본 조 2항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의 협력을 구한다. 그러한 조사는 관련 당사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관련국 영토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본 조 2항에 따라 제출된 위원 또는 위원들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동 조사결과 및 정황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또는 제안을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5. 본 조 1항 내지 4항에서 언급된 위원회의 모든 절차는 비밀로 이루어지며 동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을 구한다.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에 관한 절차가 완결된 후,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쳐 제24조에 따른 연례보고서에 동 절차의 결과에 대한 요약보고서를 포함시킬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제 21 조

1. 본 협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동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 당사국의 통보를 위원회가 접수 및 심리할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본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통보는 자국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될 경우에만 본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접수, 심리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본 조에 접수된 통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2. Taking into account any observations which may have been submitted by the State Party concerned, as well as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available to it, the Committee may, if it decides that this is warranted, designate one or more of its members to make a confidential inquiry and to report to the Committee urgently.

3. If an inquiry is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Committee shall seek the co-operation of the State Party concerned. In agreement with that State Party, such an inquiry may include a visit to its territory.

4. After examining the findings of its member or members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Commission shall transmit these findings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together with any comments or suggestions which seem appropriate in view of the situation.

5. All the proceedings of the Committe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o 4 of this article shall be confidential, and at all stages of the proceedings the co-operation of the State Party shall be sought. After such proceedings have been completed with regard to an inquiry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the Committee may, after consultations with the State Party concerned, decide to include a summary account of the results of the proceedings in its annual report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 Article 21

1. A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may at any time declare under this article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to the effect that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Such communications may be received and considered according to the procedures laid down in this article only if submitted by a State Party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recognizing in regard to itself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No communication shall be dealt with by the Committee under this article if it concerns a State Party which has not made such a declaration. Communications received under this article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

가. 일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본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통보로써 동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는 통보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를 해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기타 진술서를 통보한 국가에 송부한다. 그러한 해명서에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내에서 동 국가가 당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였거나, 현재 취하고 있는 또는 취할 수 있는 국내절차와 구제수단에 관한 언급이 포함된다.

나.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 통보 접수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가 관련 당사국 쌍방에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 일 당사국은 위원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써 당해 문제를 위원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만 당해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본 협약 규정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 위원회는 본 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경우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마. '다'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당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여타 문제에 관하여도 '나'항에 언급된 관련 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 '나'항에서 언급된 관련 당사국은 당해 문제가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동안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a) If a State Party consider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giving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t may, by written communication, bring the matter to the attention of that State party.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communication the receiving State shall afford the State which sent the communication an explanation or any other statement in writing clarifying the matter, which should include, to the extent possible and pertinent, reference to domestic procedures and remedies taken, pending or available in the matter;

(b) If the matter is not adjusted to the satisfaction of both States Parties concerned within six months after the receipt by the receiving State of the initial communication, either State shall have the right to refer the matter to the Committee, by notice given to the Committee and to the other State;

(c) The Committee shall deal with a matter referred to it under this article only after it has ascertained that all domestic remedies have been invoked and exhausted in the matter,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ly recogniz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is shall not be the rule where the application of the remedies is unreasonably prolonged or is unlikely to bring effective relief to the person who is the victim of the violation of this Convention;

(d) The Committee shall hold closed meetings when examining communications under this article;

(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c), the Committee shall make available its good offices to the State Parties concerned with a view to a friendly solution of the matter on the basis of respect for the obligation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For this purpose, the Committee may, when appropriate, set up and ad hoc conciliation commission;

(f) In any matter referred to it under this article, the Committee may call upo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to supply any relevant information;

(g)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shall have the right to be represented when the matter is being considered by the Committee and to make submissions orally and/or in writing;

아. 위원회는 '나'항에 의한 통보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1) '마'항의 규정에 따른 해결에 도달한 경우, 위원회는 사실관계와 동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2) '마'항의 규정에 따른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사실관계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과 구두 의견의 기록을 동 보고서에 첨부시킨다. 모든 경우에 보고서는 관련 당사국에 통보한다.

2. 본 조의 제규정은 본 협약의 5개 당사국이 본 조 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한다. 당사국은 동 선언문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선언문의 사본을 타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러한 철회는 본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른 여하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일 당사국에 의한 추가 통보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련 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 제 22 조

1. 본 협약 당사국은 일 당사국에 의한 협약 규정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국 관할권하의 개인들로부터의 또는 개인들을 대신한 통보를 위원회가 접수 및 심리할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본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h) The Committee shall, within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notice under subparagraph (b), submit a report:

(i) If a solution within the terms of subparagraph (e) is reached, the Committee shall confine its report to 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and of the solution reached;

(ii) If a solution within the terms of subparagraph (e) is not reached, the Committee shall confine its report to 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the written submissions and record of the oral submissions made by the State Parties concerned shall be attached to the report. In every matter, the report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2.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come into force when fiv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have made declarations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uch declarations shall be deposited by the States Parties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ransmit copies thereof to the other States Parties. A declaration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Such a withdrawal shall not prejudice the consideration of any matter which is the subject of a communication already transmitted under this article; no further communication by any State Party shall be received under this article after the notification of withdrawal of the declaration has been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unless the State Party concerned has made a new declaration.

#### Article 22

1. A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may at any time declare under this article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or on behalf of individual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who claim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by a State Party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No communication shall be received by the Committee if it concerns a State Party which has not made such a declaration.

2. 위원회는 익명이거나 그러한 통보 제출권리의 남용 또는 본 협약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여하한 통보도 본 조에 의해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본 조에 따라 제출된 통보에 관해 제1항에 의해 선언을 하였으며, 동 협약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동 당사국은 통보 접수 6개월내에 그 사건의 내용 및 구제조치를 취한 경우 그 구제조치를 해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4. 위원회는 개인으로부터 또는 개인을 대신하여 그리고 관련 당사국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본 조에 의하여 접수된 통보를 심의한다.

5. 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본 조에 의한 개인의 어떠한 통보도 심의하지 않는다.

가. 같은 문제가 어떤 다른 국제적인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의하여 심사되지 않았거나 또는 심사되고 있지 않을 것

나. 개인이 모든 가능한 국내 구제조치를 취하였을 것

다만, 구제조치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동 협약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6. 위원회는 본 조에 의해 통보를 심사할 때는 비공개회의를 개최한다.

7. 위원회는 위원회의 견해를 관련 당사국 및 개인에게 제출한다.

8. 본 조의 제규정은 본 협약의 5개 당사국이 본 조 1항에 의해 선언을 하였을 때에 발효한다.

2. The Committee shall consider inadmissible any communication under this article which is anonymous or which it considers to be an abuse of the right of submission of such communications or to be incompatibl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3.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the Committee shall bring any communications submitted to it under this article to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and is alleged to be violating any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ithin six months, the receiving State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written explanations or statements clarifying the matter and the remedy, if any, that may have been taken by that State.

4. The Committee shall consider communications received under this article in the light of all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it by or on behalf of the individual and by the State Party concerned.

5. The Committee shall not consider any communications from an individual under this article unless it has ascertained that:

(a) The same matter has not been, and is not being, examined under another procedure of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r settlement;

(b) The individual has exhausted all available domestic remedies; this shall not be the rule where the application of the remedies is unreasonably prolonged or is unlikely to bring effective relief to the person who is the victim of the violation of this Convention.

6. The Committee shall hold closed meetings when examining communications under this article.

7. The Committee shall forward its views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and to the individual.

8.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come into force when fiv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have made declarations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uch declarations shall be deposited by the States Parties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ransmit copies thereof to the other States

동 선언은 당사국에 의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타 당사국들에게 송부한다. 동 선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동 철회는 본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른 여하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개인에 의한 또는 개인을 대신한 추가 통보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련 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 제 23 조

위원회의 위원과 제21조에 의해 임명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 제 24 조

위원회는 당사국 및 국제연합총회에 본 협약에 따른 연례활동 보고서를 제출한다.

## 제 3 부

### 제 25 조

1.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 제 26 조

본 협약은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Parties. A declaration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Such a withdrawal shall not prejudice the consideration of any matter which is the subject of a communication already transmitted under this article; no further communication by or on behalf of an individual shall be received under this article after the notification of withdrawal of the declaration has been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unless the State Party has made a new declaration.

#### Article 23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and of the ad hoc conciliation commissions which may be appointed under article 21, paragraph 1 (e), shall be entitled to the facilit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experts on mission for the United Nations as laid down in the relevant sect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

#### Article 24

The Committee shall submit an annual report on its activities under this Convention to the States Parties and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 PART III

#### Article 25

1. This Convention is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2. This Conven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 Article 26

This Convention is open to accession by all States.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 제 27 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본 협약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 제 28 조

1. 각 당사국은 본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제20조에 따라 부여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
2. 본 조 1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 제 29 조

1. 본 협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본 협약의 각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동 통보접수후 4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3분의 1이상이 당사국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하여 그 승인을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 송부된다.
2. 본 조 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본 협약 당사국의 3분의 2가 각 당사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를 수락하였음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보하였을 때 발효한다.

#### Article 27

1.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this Convention or acceding to it after the deposit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ow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 Article 28

1. Each State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or ratification of this Convention or accession thereto, declare that it does not recognize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provided for in article 20.

2. Any State Party having made a reserv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at any time, withdraw this reservation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 Article 29

1. Any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thereupon communicate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States Parties with a request that they notify him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voting upon the proposal. In the event that within four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communication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s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by the Secretary-General to all the States Parties for acceptance.

2. An amendment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enter into force when two thirds of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have notified the States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at they have accepted it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한다.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본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안에 의하여 구속된다.

#### 제 30 조

1. 2개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간의 직접 교섭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그들 중 1개국의 요청이 있으면 중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중재재판 요구일로부터 6개월내에 당사국이 중재재판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동 당사국중 일반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른 요청으로 동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본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자국이 본 조 1항에 구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타 당사국은 그러한 유보를 행한 당사국과의 관계에서는 본 조 1항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3. 본 조 2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 제 31 조

1. 일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지 1년 후에 유효하게 된다.

2. 동 폐기는 그것이 유효하기 전에 발생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한 협약상의 의무로부터 당사국을 면제시키는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며, 또한 동 폐기가 유효하기 전에 이미 위원회에 의하여 심사되고 있는 여하한 문제의 계속적인 심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3. When amendments enter into force, they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accepted them,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any earlier amendments which they have accepted.

#### Article 30

1. Any dispute between two or more States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which cannot be settled through negotiation shall, at the request of one of them,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f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for arbitration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tion, any one of those Parties may refer the disput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y request in conformity with the Statute of the Court.

2. Each State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or ratification of this Convention or accession thereto, declare that it does not consider itself bound by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other States Parties shall not be bound by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ith respect to any State Party having made such a reservation.

3. Any State Party having made a reserv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may at any time withdraw this reservation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 Article 31

1. A State Party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Denunciation becomes effective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2. Such a denunciation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releasing the State Party from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in regard to any act or omission which occurs prior to the date at which the denunciation becomes effective, nor shall denunciation prejudice in any way the continued consideration of any matter which is already under consideration by the Committee prior to the date at which the denunciation becomes effective.

3. 위원회는 일 당사국의 폐기가 유효하게 된 날 이후에는 그 국가에 대한 여하한 새로운 문제의 심사도 개시하지 않는다.

#### 제 32 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과 본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가.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나. 제27조에 의한 본 협약의 발효일자 및 제29조에 의한 개정안의 발효일자

다. 제31조에 의한 폐기

#### 제 33 조

1. 본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인증등본을 모든 국가에게 송부한다.



3. Following the date at which the denunciation of a State Party becomes effective, the Committee shall not commence consideration of any new matter regarding that State.

#### Article 3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all States which have signed this Convention or acceded to it of the following:

- (a) Signatures,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under articles 25 and 26;
- (b)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under article 27 and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any amendments under article 29;
- (c) Denunciations under article 31.

#### Article 33

1. This Convention,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of this Convention to all States.

# 大韓民國 最初報告書

## 序 文 (Introduction)

1. 大韓民國은 1995년 1월 9일 拷問 및 기타 殘酷한, 非人道的 또는 屈辱的 處遇나 刑罰禁止協約(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하 '拷問防止協約' 또는 '協約'이라고 한다) 加入書를 國際聯合 事務總長에게 기탁하여 동 協約은 같은해 2월 8일 발효되었다.

2. 본 拷問防止協約 最初報告書는 大韓民國 政府가 동 協約에 加入함에 따라 義務履行을 위하여 취하여온 措置와 성취된 進展事項에 관하여 동 協約 第19條 第1項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3. 大韓民國은 權力의 相互牽制 및 均衡의 原理에 기초한 大統領中心制의 民主 共和國이다. 主權은 國民에 있고, 大韓民國 政府는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를 최대한 保障하기 위하여 立法, 司法, 行政의 3권으로 분리·구성되어 있다. 政府는 모든 個人의 基本的 自由權을 최대한 保障하여야 할 義務가 있으며, 國際條約이나 一般적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등에 의한 國際的 義務를 존중하여야 한다. 大統領은 國民의 직접선거에 의해 選出되며, 임기는 5년 單任制이다.

4. 人權保障은 각종 法令과 制度整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國民과 政府의 人權伸張을 위한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法과 制度가 있다 하여도 國民과 政府의 人權伸張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法과 制度는 그 의의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大韓民國에 있어서 人權改善 및 人權伸張과 관련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國民들이 民主主義를 향한 용기와 희망을 바탕으로 하여 분단으로 야기된 역경과 權威主義 政權에 의한 시련을 헤치고 1993년 2월의 文民政府를 출현시켰다는 사실이다.

5. 文民政府는 30여년간의 權威主義 政權에 종지부를 찍고 國民의 지지와 성원속에서 출범하여 人間의 尊嚴과 價値가 존중되고, 각자의 創意와 自由가 保障되며, 多樣性이 社會적으로 수용되는 것 등을 그 속성으로 하고, 國民 모두의 自由·平等이 保障되며 平和로운 社會안에서 활기차게 人間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社會를 건설하기 위하여 매진하고 있다.

6. 文民政府는 1993년 3월 大韓民國 건국 이래 사상최대의 赦免·復權을 실시하는 등 4회에 걸쳐 44,659명에 대한 赦免·復權을 실시하였고 自由民主主義 體制 하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公安事犯(남파간첩 포함)을 釋放하였다.

또한 文民政府는 人身拘束이 民主主義 社會에서 身體의 自由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法的 措置로서 當事者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人身을 拘束할 경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人身拘束의 慎重과 拷問防止를 위한 諸般措置를 취하여 나아가고 있다.

나아가 政府는 制度的 裝置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辯護人의 接見權을 강화하고 經濟的 弱者를 위한 法律救助를 확충하여 辯護權을 확대하는 등 人權伸張을 위한 法律的·制度的 裝置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搜查중의 不法行爲者를 엄벌하여 適法節次 遵守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7. 한편, 政府는 그동안 이룩한 經濟成長을 바탕으로 住居, 教育, 文化, 醫療, 環境등 전분야에 걸친 人間다운 生活의 保障과 幸福追求權의 신장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중 중요한 것으로는 失職者에게 失業給與를 지급하는 雇傭保險制度의 도입, 醫療保險과 國民年金의 확대실시, 障礙者와 老人등에 대한 福祉擴大, 國民의 環

境權 보호를 위한 立法的 制度的 裝置 마련등이 있다.

8. 이밖에도 大韓民國은 經濟, 社會, 文化的으로 커다란 개혁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地方自治制度的 전면실시에 의한 民主主義의 정착, 統合選舉法 시행에 의한 參政權의 실질적 확대와 政治改革, 金融實名制·不動產實名制의 실시에 따른 經濟正義의 실현등 正義가 강물처럼 흐르는 民主社會를 건설하기 위하여 진력하고 있다.

9. 大韓民國 政府는 最初報告書를 작성함에 있어서 拷問防止委員會 1차회의가 1988년 4월 20일 채택한 締約當事國 報告書의 形式과 內容에 관한 一般指針을 참고하였다.

본 最初報告書의 第1部는 拷問防止에 관한 憲法·法律상의 規程, 協約과 國內法과의 關係, 人權保護機關, 拷問被害를 주장하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 拷問防止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등 一般的 事項을 언급하였다.

본 最初報告書의 第2部는 協約 第2條 내지 第16條의 이행과 관련된 立法, 司法, 行政措置 등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 第1部 一般的 事項 (General Information)

### A. 拷問防止에 관한 憲法·法律상의 規程

10. 최초의 大韓民國 憲法은 1948년 7월 17일 公布되었으며 현행 憲法이 公布된 1988년 2월 25일까지 수차례의 憲法改正이 있었다. 현행 憲法은 보다 확실한 人權保障을 위해 基本權 條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國民의 열망과 합의에 따른 節次를 거쳐 성립되었다.

憲法은 國家의 最高組織原理로서 그동안 大韓民國의 政治, 經濟 및 社會등 各분야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大韓民國 國民의 人權伸張에 많은 역할을 하여왔다.

11. 人權은 大韓民國 憲法에 의하여 保障된다.

憲法 第10條는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추구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第37條 第1項은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基本的 人權을 포괄적으로 保障함으로써 大韓民國 國民은 拷問으로부터 自由로운 地位에 있음을 추상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協約 第2條 第2項과 관련하여 상세히 언급하는 바와 같이 大韓民國 憲法 第37條 第2項은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 秩序維持 또는 公共

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을 侵害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바, 大韓民國에서는 拷問에 의하여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을 侵害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正當化될 수 없다 할 것이다.

12. 憲法 第12條 第2項은 “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自己에게 불리한 陳述을 強要당하지 아니한다”, 第12條 第7項은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 인정될 때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라고 각각 규정하여 拷問 또는 殘酷한 處遇나 刑罰을 禁止하고 있고, 나아가서 拷問에 의한 自白을 證據로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證據法的 측면에서 그러한 行爲들이 被疑者·被告人에게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13. 이러한 憲法규정에 따라 下位 法規範인 法律과 規則들(laws and regulatory statutes)은 憲法에서 인정된 諸般權利의 구체적인 保障과 拷問 기타 殘酷한, 非人道的 또는 屈辱的 處遇나 刑罰을 禁止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14. 拷問을 禁止한 憲法규정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拷問뿐만 아니라 殘酷한, 非人道的 또는 屈辱的 處遇나 刑罰을 한 公務員등은 중한 刑을 받도록 하였다(상세한 내용은 協約 第4條와 관련하여 언급한다).

(a) 裁判·檢察·警察 기타 人身拘束에 관한 職務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補助하는 자가 職務와 관련하여 暴行 또는 苛酷한 行爲를 한 경우에는 處罰받고, 不法 逮捕·監禁한 경우와 그 行爲의 結果 사람을 致死·傷한 경우에는 刑이 加重되어 處罰받는다.

(b) 기타 公務員의 경우도 行爲 類型에 따라 暴行, 脅迫, 傷害, 逮捕, 監禁, 保護·監督者 虐待등의 刑으로 處罰되며 야간·2인이상이 共同으로 또는 凶器등을 사용한 경우는 刑이 加重되어 處罰받는다.

(c) 특히 國家安全企劃部 職員에 대하여는 職權濫用등의 경우에 刑을 加重하여 處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5. 또한 公務員이 拷問등 行爲에 가담한 경우 公務員과 그 上級者는 刑罰의외에 任用權者의 懲戒責任을 면하지 못하며, 그 行爲에 따른 民事責任을 부담한다(상세한 내용은 協約 第4條, 第14條와 관련하여 언급한다).

16. 拷問은 주로 公務員들이 상대방으로부터 情報나 自白을 얻기 위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따라서 陳述拒否權 保障과 強要된 自白에 대한 證據能力 배제는 拷問등 苛酷行爲를 억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상세한 내용은 協約 第2條 第1項, 第15條와 관련하여 언급한다).

(a) 憲法(第12條 第2項)과 刑事訴訟法(第200條 第2項, 第289條)이 被疑者 또는 被告人의 陳述拒否權을 인정한 것은 拷問등에 의한 陳述을 拒否할 수 있는 權利를 포함한다.

(b) 憲法(第12條 第7項)과 刑事訴訟法(第309條)은 搜查機關등에서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不當한 長期化등에 의하여 자의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 인정될 때, 또는 自白이 補強證據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裁判上 證據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拷問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7. 기타 搜查從事者의 人權保護를 위한 注意規定, 檢事의 留置場監察, 抗告·再抗告·憲法訴願·準起訴節次, 逮捕·拘束令狀制度, 逮捕·拘束適否審査制度도 직·간

접으로拷問을防止하기 위한制度라고 할 수 있다(상세한 내용은協約 第2條 第1項과 관련하여 언급한다).

### 外國人 保護

18. 大韓民國 憲法이 保障하는 基本의 人權은 原則的으로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外國人에게도 平等하게 적용된다.

憲法 第11條 第1項은 “누구든지 性別·宗教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社會的 身分의 개념은 出生에 의하여 定해지는 先天的 身分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은 社會的 評價를 수반하는 모든 것을 지칭한다. 뿐만 아니라 憲法에 규정된 差別禁止事由는 예시적 열거로서 差別의 원인이 열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平等이 保障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19. 選舉權이나 被選舉權과 같이 大韓民國의 國籍을 보유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분명한 權利를 제외한 여타의 權利는 大韓民國의 主權이 미치는 領土내에 거주하거나 일시 체류하는 모든 外國人에게도 大韓民國 國民과 동등하게 保障된다. 따라서 外國人은 拷問과 관련된 憲法과 法律의 規정에 의하여 內國人과 같이 保護받는다. 다만 外國人이 大韓民國을 상대로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相互保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國家의 損害賠償責任이 인정된다(國家賠償法 第7條).

### B. 協約과 國內法과의 關係

20. 大韓民國 憲法 第6條 第1項은 “憲法에 의하여 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協約은 大韓民國 國會의 同意를 얻어 政府에 의하여 批准·公布됨으로써 별도의 國內立法措置 없이 國內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國內法規와 본 協約이 충돌하는 경우 一般原則에 따라 事後法 優先의 原則(the Lex posteriori rule)과 特別法 優先의 原則(the principle of the precedence of special law)이 적용된다.

21. 大韓民國 憲法과 法律은 拷問防止協約과 상충되지 아니한다. 다만, 韓半島에 있어서의 남북분단과 대치라는 特殊事情으로 인하여 協約加入시 동 協約 第21條(當事國間 異議提起權)와 第22條(個人的 拷問被害請願權)에 대하여는 選擇을 留保하였다. 그러나, 大韓民國 政府는 市民的 및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選擇議定書(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加入하여 拷問被害者는 人權理事會(Human Rights Committee)에 그 被害를 請願할 수 있으므로 國際機關에 의한 拷問 被害者의 救濟에는 장애가 있지 아니하다.

22. 그 밖에도 大韓民國은 拷問과 직접·간접으로 관계있는 人權規約에도 加入하고 있다.

市民的 및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市民的 및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選擇議定書(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武力衝突犧牲者 保護에 관한 4가지 제네바協約(1949)(The four Geneva Conventions of

1949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armed conflict), 2가지 제네바協約 選擇 議定書(1977)(The two Additional Protocols of 1977 to the Geneva Conventions), 女性에 대한 모든 形態의 差別撤廢에 관한 協約(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兒童의 權利에 관한 協約(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人身賣買禁止 및 他人의 賣春行爲의 搾取禁止를 위한 協約(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集團殺害罪의 防止와 處罰에 관한 協約(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모든 形態의 人種差別撤廢에 관한 協約(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등에 加入하고 있다.

23. 그외에도 大韓民國은 유엔의 宣言과 準則을 존중하고 지키고 있다. 世界人權宣言(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非常時와 軍事的 葛藤에서의 女性과 兒童保護宣言(the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Emergency and Armed Conflict of 1974), 被拘禁者 處遇에 관한 最低基準規則(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拷問 및 기타 殘酷한, 非人道的 또는 屈辱的 處遇나 刑罰에 대한 個人保護宣言(the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法執行官 行動章典(the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등에 대하여도 그 理念을 존중하고 있다.

24. 또한 大韓民國 政府는 拷問과 관련하여 유엔人權委員會(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特別報告官의 활동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 C. 人權保護機關

2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拷問防止協約은 국내에서의 특별한 立法措置 없이 大韓民國에서 國內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拷問防止協約은 裁判機關, 搜查機關, 刑執行機關은 물론 모든 國家機關에 의하여 준수되어야 한다.

#### 法院

26. 法院은 國民의 基本權이 國家權力등에 의하여 侵害된 경우 그 救濟를 행하는 基本權의 保障機關이다. 國民의 基本權은 憲法상 裁判請求權의 保障으로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

27. 大韓民國 憲法은 모든 個人에게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保障하고 있다(憲法 第27條, 第101條).

28. 司法權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급 法院에 부여되어 있으며(憲法 第101條 第2項), 憲法은 독립되고 공정한 裁判을 보증하기 위하여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고 규정하여(憲法 第103條) 法官은 行政府, 立法府는 물론 여론등 社會 諸勢力으로부터 독립하여 裁判하도록 하고 있다.

29.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규정하여 行政權에 의한 司法權의 侵害를 防止하고 있으며(憲法 第101條 第3項) 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임명하고, 大法官은 大法院長의 제청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임명하며, 기타 法官은 大法院長이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임명하여 法官人事의 독립성을 保障하고 있다(憲法 第104條). 法官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憲法 第106條 第1項).

30. 法院은 拷問등에 의하여 基本權이 侵害된 경우 拷問등 行爲者에 대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刑을 宣告할 수 있고, 國家機關등에 대하여 被害者에게 적정한 賠償을 지급하도록 宣告함으로써 拷問등 不法行爲를 예방함과 동시에 拷問등의 被害者를 救濟하여 國民의 基本權保障에 기여하고 있다.

### 憲法裁判所

31. 憲法裁判所는 憲法訴願 審判機關으로서 基本權을 保障하는 機關이다. 國民의 基本權이 公權力에 의하여 侵害되었을 때 그 救濟를 憲法裁判所に 請求할 수 있다. 또한 憲法裁判所는 基本權 侵害의 내용을 담고 있는 法律에 대해서도 違憲 法律審判을 행함으로써 基本權 保障機關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憲法裁判所는 (a) 法院의 제청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b) 彈劾의 審判 (c) 政黨의 解散審判 (d) 國家機關 상호간,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간 및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e)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2. 憲法裁判所는 9인의 裁判官으로 구성되며 法官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大統領이 임명하되 3인은 國會에서 추천하는 자를, 3인은 大法院長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憲法 第111條 第2項, 第3項). 憲法裁判所 裁判官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憲法 第112條 第3項). 이는 憲法保障者로서 憲法과 良心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軍事法院

33. 軍組織의 特殊性에 따라 憲法 第27條 第2項은 一般法院과 구별하여 特別法院으로 軍事法院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組織, 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軍事法院法은 軍人, 軍務員등 特殊한 身分에 대한 裁判管轄權과 大韓民國 領域 안에서의 중대한 軍事상 機密에 관한 罪 및 捕虜에 관한 罪등 일부 軍刑法을 違反한 内外國人에 대한 裁判管轄權을 軍事法院에 부여하고 있다(軍事法院法 第2條). 그 身分이 軍人, 軍務員인 拷問犯罪者에 대하여는 犯罪地가 大韓民國 領域 내외를 불문하고 軍事法院에 原則적인 裁判管轄權이 있다.

34. 大韓民國의 軍事法院은 軍組織내에 설치되어 軍事關聯犯罪에 대한 管轄權을 가지는 것이므로 設置, 管轄상의 特殊性이 인정되나, 運營은 一般司法制度와 유사하여 公正성이 保障되고 있다.

(a) 軍事法院이 행한 裁判에 대하여서는 궁극적으로 大韓民國 最高法院인 大法院에 上告하는 길이 保障되어 있으며, 軍檢察官의 公權力행사에 대하여서도 憲法裁判所に 憲法訴願등의 權利救濟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b) 軍事法院의 軍判事와 軍檢察官도 一般法院을 구성하는 判事들과 동등한 法曹 資格을 보유하고 身分保障이 되는 軍法務官들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c) 軍事法院法등은 搜查節次로부터 公判·執行節次에 이르기까지 刑事訴訟法과 대동소이한 규정을 두어 그 節次가 一般 刑事節次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協約의 각 條項과 관련하여 大韓民國의 制度를 언급하면서 軍事法院法이 刑事



訴訟法과 동일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軍事法院法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였다).

#### 其他 人權保護機關

35. 大韓民國은 犯罪의 搜查 및 訴追를 담당하는 檢事에게 人權保障과 관련된 責任을 부과하여 拷問등 苛酷行爲를 예방하고 있다.

(a) 大韓民國은 法務部에 人權業務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檢事 3명과 補助職員으로 구성된 “人權課”(Human Rights Division)를 두고 있다. 人權課는 “人權擁護”(human rights protection), “法律救助”(legal aid), “遵法情神의 啓蒙”(enhancement of spirit of observance of law and order)등에 대한 業務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동 부서에서는 人權擁護에 대한 綜合計劃의 樹立 및 施行, 人權關聯法令 및 制度에 관한 調査·研究, 人權擁護에 관한 각 部處간의 協力, 人權問題에 대한 弘報對策, 人權關聯 國際協約의 加入 및 國內의 施行에 관한 法律問題를 검토하고 있다.

(b) 大韓民國 檢察은 個人의 基本의 人權을 保護 伸張하기 위한 措置의 일환으로 전국 각 地方檢察廳 및 支廳에 人權相談所를 설치하고, 人權專擔檢事를 지정하여 人權侵害事例에 대한 情報蒐集 및 人權侵害와 관련된 刑事事件이나 陳情 內查事件을 特別管理하고 있다.

36. 搜查를 담당하는 司法警察官吏에게도 拷問등 人權侵害 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責任을 부과하고 있다.

1982년부터 일선 警察署에서도 搜查官의 偏頗·不當搜查 또는 苛酷行爲에 대한

異議申請을 接受하여 再調査·是正하고 있으며, 1993년 5월부터는 警察廳 監査官室, 地方警察廳 및 海洋警察廳 監査官室, 警察署長室에 人權侵害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搜查상 暴行·苛酷行爲등의 人權侵害行爲를 接受·處理하고 있다.

1992년 1월부터는 警察廳 및 전국 地方警察廳의 搜查課長을 人權保護官으로 지정하여 搜查상 人權保護를 위한 搜查要員을 교양하고 管內 留置場등 人權脆弱場所를 불시 暗行監察하며 人權保護施策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1994년 12월부터는 일선 警察署 留置場에 收容중인 被疑者를 송치직전 警察署長이 개별적으로 心傷面담을 실시하여, 억울한 일이나 불편사항등을 직접 확인하여 偏頗搜查나 苛酷行爲등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있다.

#### D. 拷問被害를 주장하는 個人이 취할 수 있는 措置

37. 拷問被害등 人權의 侵害를 주장하는 個人은 大韓民國의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가지의 救濟手段을 이용할 수 있다. 본 報告書에서는 拷問에 따른 救濟方法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基本權侵害시의 一般的인 救濟方法을 다루었다.

#### 38 請 願

一般的으로 國家機關의 拷問등에 의해 基本權이 侵害되었다고 주장하는 個人은 憲法 第26條에 따라 당해 拷問등과 관련된 被害의 救濟, 拷問등 관련 公務員의 懲戒나 處罰등을 請願하는 방법으로 그 救濟를 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請願의 方法과 節次는 請願法 第6條 내지 第8條가 규정하고 있다.

### 39. 準抗告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관한 處分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法院에 대하여 그 處分의 取消 또는 變更을 請求할 수 있다(刑事訴訟法 第417條).

따라서 拷問의 한 形態로 이루어진 拘禁 또는 拘禁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處分이 拷問 기타 殘酷한, 非人道的 또는 屈辱的 處遇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法院에 그 處分의 取消 또는 變更을 要求할 수 있다.

### 40. 損害를 수반한 權利의 侵害인 경우의 救濟

公務員의 職務상 不法行爲로 인하여 基本的人權이 侵害된 個人은 國家를 상대로 國家賠償法과 民法이 정하는 節次에 따라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憲法 第29條 第1項).

또한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刑事被疑者가 不起訴(無嫌疑) 處分을 받거나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자가 無罪 判決을 받은 때에는 刑事補償法이 정하는 節次에 따라 國家에 대하여 刑事補償金을 請求할 수 있다(憲法 第28條).

### 41. 犯罪被害者 救助請求

大韓民國 憲法은 第30條에서 “타인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대한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여, 犯罪被害者의 國家에 대한 救助請求權을 규정하고 있다.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犯罪被害者救助法은 犯罪被害救助金의 支給方法과 節次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42. 告訴·告發措置

公務員의 拷問등에 의하여 基本權이 侵害된 경우에 侵害를 주장하는 個人은 檢察이나 警察등 搜查機關에 不法行爲의 배제를 請求할 수 있다.

人身에 대한 不法監禁이나 拷問등 不法行爲에 대하여 告訴나 告發을 제기함으로써 加害者에 대한 調査·訴追節次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告訴·告發을 制度的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大韓民國의 法律은 裁定申請節次(刑事訴訟法 第260條 내지 第265條, 軍事法院法 第301條 내지 第306條)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으며, 上級檢察廳에 대한 抗告·再抗告 節次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다.

43. 기타 拷問등의 被害者는 民願을 제기할 수 있고, 行刑法, 少年院法, 軍行刑法등의 規定에 따라 請願을 할 수 있다.

44. 여기에서 거론된 각종 拷問被害 救濟手段에 대하여는 協約의 개별조항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보다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 E.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

45. 拷問被害를 주장하는 個人이 취할 수 있는 措置가 國內法 또는 國際法에 의하여 保障되어 있다 하여도 法律知識과 訴訟技術이 부족한 一般人이 法律專門家인 辯護士의 助力없이 구체적인 救濟手段을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아니하다.

刑事訴訟法은 被疑者·被告人등을 拷問등 苛酷行爲로부터 保護하기 위하여 被疑者·被告人들에게 辯護人選任權을 保障하고(刑事訴訟法 第29條, 第30條) 辯護人選任에 대한 告知가 없으면 被疑者 被告人등을 逮捕·拘束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同法 第200條의5, 第209條, 第72條, 第88條), 拘束被告人·被疑者의 辯護人接見交通權을 인정하고 있다(同法 第34條). 또한 被告人이 未成年者, 70세이상자, 聾啞者, 心神障礙의 의심이 있는 자, 빈곤 기타의 사유로 辯護人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法院이 職權으로 辯護人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同法 第33條)

46. 大韓民國 政府는 억울한 被害를 당하고도 法을 모르거나 訴訟費用이 없어서 스스로 法的 手段을 강구하지 못하는 國民들에게 無料法律相談, 訴訟費用의 지원, 訴訟代理등 法律救助事業을 시행하고 있다. 1987년 9월 1일 발족된 大韓法律救助公團(Korea Legal Aid Corporation, 이하 '公團'이라고 한다)은 大韓民國 政府의 國庫補助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公團은 法院·檢察廳 소재지에 51개 本部·支部·出張所를 두어 농·어민, 월 평균수입 100만원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등을 대상으로 法律救助를 하고 있다.

참고로 公團의 최근 3년간 法律救助 실적은 다음과 같다.

- 法律相談 : 1992년 303,234건, 1993년 342,049건, 1994년 344,364건
- 訴訟救助 : 1992년 28,321건, 1993년 34,625건, 1994년 37,729건

47. 한편 大韓民國에서는 매년 수십명의 司法試驗 合格者만이 배출되다가 1981년부터 그 수가 확대되어 매년 300여명의 司法試驗 合格者가 배출되어 그중 일부가 判·檢事로 임용되고 나머지가 辯護士로 종사하여 왔다. 1995년 7월 현재 인구는 4,600만명임에도 전체 辯護士 수는 3,700명 정도(判·檢事 제외)로 우리나라 經濟·社會的 餘力에 비추어 辯護士 數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상존하였다.

이와같은 현실은 辯護士 數의 절대부족 현상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一般人들의 辯護士 접근이 쉽지 아니하였다. 결국 法律上 保障된 諸般權利는 國民들에 의

하여 쉽게 행사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앞서 설명한 公團은 그 실적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公團소속의 辯護士 報酬가 상대적으로 낮고 地方勤務등 勤務여건이 나빠(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辯護士의 절대 수가 적고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選任料가 상대적으로 높다) 公團에서는 농어촌지역에 辯護士를 배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속 辯護士 부족으로 刑事事件의 法律救助를 할 수 없었고, 法律救助對象者를 확대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制度的 限界에 부딪치게 되었다.

48. 그러나, 1995년에는 國民의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확충하기 위한 획기적인 2가지 措置가 취해졌다. 그중 하나는 辯護士 關門試驗인 司法試驗 合格者를 종전의 매년 300명에서 500명 내지 그 이상으로 대폭 늘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公益法務官制度를 도입한 것이다.

#### 公益法務官制度

49. 大韓民國에서는 남북대치라는 特殊事情에서 國家安保를 위하여 國民에게 國防의 義務를 지우고 있다. 公益法務官制度는 司法研修院 修了者(司法試驗 합격 후 2년간의 司法研修院 과정을 수료하면 辯護士 資格이 부여된다)중 兵役未畢者 가운데 軍法務官 所要人員을 제외한 사람을 公益法務官으로 임용하여 法律救助業務등에 종사토록 하는 制度이다.

※ 公益法務官制度는 軍服務가 義務로 부과된 大韓民國에서 軍服務의 일환으로 일정기간 法律救助등 對國民 봉사활동에 義務적으로 종사토록 하는 制度이나, 軍服務 義務가 있는 나라는 물론 軍服務 義務가 없는 나라에서도 法曹人에게 주어지는 社會的 地位와 評價에 상응하여(法治主義가 강화될수록 法曹人에 대한 社會的 地

位와 評價는 상승할 것임) 상당기간 社會奉仕 차원의 義務奉仕를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大韓民國의 公益法務官制度를 참고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50. 公益法務官은 軍服務의 일환으로 法律救助業務등에 종사하므로 그 服務의 철저를 담보하기 위하여 公務員 身分으로 하고, 그의 業務의 專門性을 고려하여 法務部 所屬 公務員으로 하였으며, 法務部長官이 일괄하여 임용, 服務監督하고 있다.

公益法務官의 業務는 法律救助業務를 위주로 하면서 國選辯護業務와 國家·行政訴訟등에서 國家側 代理人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公益法務官 수가 증가하면 國家 각 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法律關聯 業務에도 종사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公益法務官은 위 業務에 종사하기 위하여 法律救助法人과 檢察廳 등에 勤務하고 있다. 특히 農漁村地域의 法律專門人力을 확보하기 위하여 法院·檢察廳 所在地중 辯護士 없는 地域, 法院·檢察廳 所在地중 法律救助 專擔辯護士가 없는 地域 등에 優先하여 배치하고 있다.

51. 公益法務官制度의 도입으로 法律救助 專擔辯護士의 확보가 가능함으로써 農漁村地域에 法律專門家인 公益法務官을 배치하여 농어민들에게 양질의 法律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고, 非法律家에 의한 法律相談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法律專門家에 의한 실질적인 法律相談으로 해소될 수 있게 되었으며, 刑事法律救助까지 法律救助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法律救助 대상자의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종래 大韓民國에서는 私選辯護料와 國選辯護料의 選任料 차이 때문에 國

選辯護가 실질적이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公益法務官이 國選辯護業務에 종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실질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被疑者 被告人등은 수시로 法律專門家를 접견할 수 있어 拷問의 被害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拷問被害者의 경우 民·刑事상 救濟節次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 F. 搜查機關·矯正施設

52. 制度的으로나 沿革的으로 볼 때 拷問 기타 殘酷한, 非人道的 또는 屈辱的 處遇나 刑罰이 자행될 수 있는 대표적인 機關은 搜查機關과 矯正施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協約의 이행과 관련된 조치와 진전사항을 논의하기에 앞서 大韓民國의 搜查機關과 矯正施設을 개괄적으로 언급한다.

### 檢事

53. 檢事는 犯罪搜查로부터 裁判의 執行에 이르기까지 刑事節次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여 刑事司法의 正義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機關이다. 즉 檢事는 搜查節次에 있어서 搜查의 主宰者로서 司法警察官吏를 指揮·監督하며, 搜查의 결과 公訴提起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公判節次에서는 被告人에 대립하는 當事者로서 法院에 대하여 法令의 正當한 적용을 請求하고, 裁判이 確定된 때에는 刑의 執行을 指揮 監督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國家機關이다.

54. 위와 같이 檢事는 行政府에 속하는 公務員이나 司法權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오로지 眞實과 正義를 따라야 할 義務를 지는 準司法機關(Justizbehörde)

이다. 檢事의 任命資格은 法官의 그것과 동일하며(檢察廳法 第29條) 檢事의 身分은 保障된다(同法 第37條). 檢事は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을 받거나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면 罷免, 停職 또는 減俸의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55. 大韓民國에서는 檢事は 搜查의 主宰者이고 司法警察官吏는 檢事의 補助機關이다(刑事訴訟法 第195條, 第196條, 檢察廳法 第4條 第2號). 大韓民國에서는 法官과 같은 資格을 가지고 身分이 保障된 檢事의 搜查指揮權을 인정함으로써 公正성이 담보될 수 있고 拷問등 不法搜查를 보다 확실히 배제할 수 있으며 搜查에 있어서의 人權保障을 제고하고 있다.

(a) 檢事は 司法警察官吏를 指揮·監督하고 있다. 搜查에 있어서 양자의 관계는 相互協力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라 上命下伏關係에 있다. 따라서 檢事は 司法警察官吏에 대하여 搜查에 관한 一般的 指揮權과 具體的 指揮權을 가지며, 司法警察官吏는 犯罪搜查에 있어서 소관 檢事의 職務상 발한 命令에 복종하여야 한다(檢察廳法 第53條). 檢事의 司法警察官吏에 대한 指揮監督權을 制度的으로 保障하기 위하여 (b)~(d)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b) 逮捕令狀·拘束令狀·押收搜索令狀등은 檢事만이 請求할 수 있다. 즉 檢事が 直接請求하든지 司法警察官이 檢事에게 신청하여 檢事의 請求로 判事가 발부한다(刑事訴訟法 第200條의2 第1項, 第201條 第1項, 第215條). 또한 檢事만이 搜查 終結權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 司法警察官으로 하여금 즉시 事件을 檢察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同法 第198條의 2 第2項).

(c) 司法警察官吏가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不當한 行爲를 하는 경우에는 地方 檢察廳 檢事長은 당해事件의 搜查中止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교체 임용을 요구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正當한 理由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교체 임용의 요구

에 응하여야 한다(檢察廳法 第54條).

(d) 檢事が 작성한 調書와 司法警察官이 작성한 調書의 證據能力에 차이가 있고(刑事訴訟法 第312條), 司法警察官吏는 管轄區域의의 搜查에 관하여 檢事長 또는 支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同法 第210條). 檢事의 留置場監察(同法 第198條의2) 緊急逮捕에 관한 承認權(同法 第200條의3 第2項), 司法警察官의 檢事長 또는 支廳長에 대한 搜查事務報告 義務(司法警察官吏執務規則 第11條)와 情報報告 義務(同規則 第12條)등의 特別規定이 있다.

#### 司法警察官吏

56. 司法警察官吏에는 一般司法警察官吏와 特別司法警察官吏가 있다.

(a) 一般司法警察官吏에는 司法警察官과 司法警察吏가 있다. 搜查書記官, 搜查事務官, 警務官, 總警, 警正, 警監, 警衛는 司法警察官으로서 檢事의 指揮를 받아 搜查하여야 한다(刑事訴訟法 第196條 第1項, 檢察廳法 第46條 第2項, 警察公務員法附則 第6條). 警査, 警長, 巡警은 司法警察吏로서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指揮를 받아 搜查를 補助하여야 한다(刑事訴訟法 第196條 第2項). 이 이외에도 法律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를 정할 수 있다(同條 第3項).

(b) 特殊分野의 搜查를 담당하는 司法警察官吏를 特別司法警察官吏라고 한다. 森林·海士·專賣·稅務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할자와 그 職務의 범위는 法律(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행할자와그職務範圍에 관한法律)으로써 정한다(同法 第197條). 特別司法警察官吏는 그 권한의 범위가 사항적·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에 특색이 있으며, 司法警察官吏로서의 권한과 지위에 있어서는 一般司法警察官吏와 같다.

(c) 國家安全企劃部 職員은 國家安全企劃部長의 지명을 받아 다음 犯罪에 대하여 司法警察官吏 또는 軍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할 수 있다(國家安全企劃部法 第16條).

- 刑法중 內亂의罪·外患의罪, 軍刑法중 叛亂의罪·暗號不正使用罪
- 軍事機密保護法에 규정된 罪, 國家保安法에 규정된 罪(다만 第7條, 11條 第10條에 규정된 罪는 제외)
- 기타 國家安全企劃部 職員의 職務와 관련된 犯罪

### 矯正施設

57. 矯正施設은 懲役·禁錮·拘留등의 自由刑을 執行할 뿐만 아니라 刑事被疑者, 被告人 그리고 死刑의 宣告를 받은 자를 收容하는 國家施設을 의미한다. 大韓民國에서는 矯正施設의 最高責任者가 法務部長官으로 통상 檢事·判事의 職에 있던 자 중에서 임명되어 왔으며 현재의 法務部長官은 大法官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矯正施設의 실무 最高 責任者인 矯正局長 역시 檢事가 그 職을 담당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組織構造는 收容施設에서의 拷問등 人權侵害排除와 人權尊重에 대한 大韓民國 政府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뒤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法務部長官등의 巡迴點檢과 判事나 檢事の 視察은 刑事被告人의 실태와 刑의 執行에 관한 適法性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58. 少年分類審査院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少年이 保護者의 正當한 監督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刑事상 罪를 범한 자등에 대하여 保護處分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그 分類審査를 위탁받아 精神醫學·心理學·教育學·社會學 기타 專門的

인 知識에 의한 分類審査를 실시하고 그 結果를 法院에 通報하게 된다. 위탁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하나 分類審査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少年部 判事는 審理結果 保護處分の 需要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少年法 第32條 第1項 第6號에 의하여 短期로 少年院에 송치하든지 少年院에 송치하는데 短期送致인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6개월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少年院法 第32條, 第33條).

이들 경우에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少年院長·少年分類審査院長등은 保護少年등으로부터 處遇 또는 日新상의 사정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수시로 保護少年등을 면접하여 適法節次의 遵守를 保障하고 있다(少年院法 第10條).

59. 保護監護所는 罪를 범한 자중 再犯의 危險性이 있는 자로서 특수한 教育·개선 및 治療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監護施設에 收容, 이들의 社會復歸를 추진하고 社會를 保護함을 목적으로 社會保護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機關이다.

保護監護에 대하여는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刑事訴訟法과 行刑法을 적용토록 하여 被保護監護者의 人身保護에 안전을 기하고 있다(社會保護法 第42條).

### 軍搜查機關등

60. 앞서 33에서 언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軍檢察官과 軍司法警察官이 犯人·犯罪事實 및 證據를 搜查하는데, 대부분 절차는 刑事訴訟節次와 유사하다.

軍矯導所는 一般矯導所와 달리 軍受刑者와 軍未決收容者를 收容하는 施設로

軍行刑法과 軍矯導所令에 따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정은 行刑法과 같다.

## G. 기타 주요 고려사항

61. 大韓民國에서 拷問防止를 위한 諸般措置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는 大韓民國의 經濟·社會的 狀況變化 특히 國民의 教育水準과 南北對峙狀況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 人口·經濟救助, 教育水準

62. 人口·經濟救助의 변화와 教育水準의 향상은 人權의 개념에 변화를 가져왔고 國民들의 人權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더불어 拷問등 國家權力的 不當한 處遇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게끔 하였다.

63. 大韓民國의 인구는 1994년말 현재 4,445만명으로서, 인구밀도는 1㎢당 447.3명이다.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급속한 인구증가가 한때 심각한 社會問題로 대두되었으나 家族計劃運動의 성공과 國民의 의식변화로 두드러지게 인구증가율이 감소하였다. 1994년 인구증가율은 0.90%이다.

人口構造상 눈에 띄는 특징은 1994년 人口調査에서 25세 미만이 전체인구의 42.8%로 나타나듯이 高等教育을 받은 젊은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5세 이상의 소위 勞動人口(working age, productive age)는 1975년 2,092만명에서 1994년 3,32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64. 經濟構造는 지난 30여년간 지속된 經濟成長의 결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끝난 해인 1966년에는 GNP중에서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34.8%, 2차산업이 20.5%, 3차산업이 44.7%였으나, 1994년에는 각

각 7.3%, 42.7%, 50.0%로 조정되었다. 현재 大韓民國은 급속히 산업화되어 가는 國家(An upper middle-income, fast-industrializing country)이다.

또한 1962년에는 GNP가 23억불, 1인당 國民所得이 87불이었으나 1994년에는 GNP가 3,769억불, 1인당 國民所得이 8,483불로 상승하여 지난 4반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율을 기록한 國家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같은 經濟成長은 잘 教育받은 풍부한 산업인력을 바탕으로 수출지향적인 產業戰略을 추진한 데에서 기인한다. 大韓民國은 세계 10대 鐵鋼產業國의 하나이며, 반도체·전자산업·조선·자동차·화학산업 등이 주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65. 1949년 教育法 제정이래 國民學校 教育은 義務教育으로서 1970년 이래 해당 연령자의 100%가까운 사람(일부 精神患者등만 제외)이 國民學校 教育을 받고 그중 99%에 해당하는 사람이 中學校에 진학하고 있으며, 중졸자의 高等學校 진학율은 98%에 이르고, 고졸자의 대학 진학율은 51.4%에 이르고 있다. 大韓民國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일부 노인(과거 일제시대하에서는 教育이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됨)과 精神患者를 제외하면 거의 100%의 國民이 文字를 해독하고 있다. 또한 國民의 대부분이 中等教育 이상의 教育을 받고 있어 大韓民國 國民의 權利意識과 權利被害에 대한 救濟要求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여 떨어지지 아니한다.

### 韓半島 安保環境

66. 세계적으로는 冷戰構造가 와해되었으나 韓半島의 安保環境은 먼동이 뜨기 전의 깊은 어둠처럼 화해시대의 한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고 있다.

67. 大韓民國 政府는 北韓이 統一을 향한 동반자로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하

여 韓半島에서의 平和定着을 함께 모색해 나아가야 할 民族共同體의 成원이라는 인식하에 軍事的 大峙상황 속에서도 北韓과 民族統一을 위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북한에 쌀을 보내었으며, 未轉向長期囚였던 이인모를 北韓에 送還하는 등 南北和解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민족상잔의 비극인 韓國戰爭을 도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전후에도 對南赤化統一 路線을 버리지 아니하고 1968년에는 청와대습격을 위하여 武裝間諜團을 남파하고, 1983년에는 버마 랑군 爆發事件으로 政府要人을 살해하였으며, 1987년에는 KAL기를 爆破하여 무고한 115명의 民間人을 살해하는 등 각종 테러行爲를 자행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間諜團을 조직하여 우리 體制의 와해책동을 계속하면서 수시로 官營放送을 통해 우리 國民들에게 政府의 顛覆打倒를 煽動하고 있다.

68. 이러한 韓半島의 分단상황은 大韓民國에 있어서의 基本權을 제약하는 한 요소이나 國民의 本質的인 權利를 侵害하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大韓民國에서는 拷問등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을 侵害하는 行爲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文民政府는 이와 같은 韓半島 상황에서도 國民의 自由와 權利가 최대한 保障되고 伸張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함에도 韓半島의 分단상황은 大韓民國의 人權狀況에 대한 客觀的인 評價를 외면하고 진상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 第2部 協約 第1部 各條項關聯情報

(Information in relation to articles  
in part I of the Convention)

### 第2條 (Article 2)

#### 第1項

69. 世界人權宣言의 精神과 拷問防止協約의 規程의 意義는 拷問 및 기타 殘酷한, 非人道的 또는 屈辱的 處遇와 刑罰을 禁止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規程을 두고 있는 大韓民國의 法체계속에서 구현되어 있다.

70. 大韓民國의 基本法인 憲法에는 拷問을 防止하기 위하여 大韓民國이 立法的·行政的·司法的 措置를 취하도록 하는 직·간접 規程을 두고 있다.

(a)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大韓民國은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憲法 前文)

(b)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추구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同法 第10條).



(c) 모든 국민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強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同法 第12條 第1項).

(d) 모든 국민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불리한 陳述을 強要당하지 아니한다(同法 第12條 第2項).

(e)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證據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同法 第12條 第7項).

(f)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同法 第37條 第1項).

(g)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侵害할 수 없다(同法 第37條 第2項).

71. 그밖에도 憲法은 令狀主義(同法 第12條 第3項), 辯護人 助力을 받을 權利(同法 第12條 第4項), 逮捕 또는 拘束의 告知와 辯護人選任權 告知(同法 第12條 第5項), 拘束適否審查請求權(同法 第12條 第6項), 無罪推定の 原則(同法 第27條 第4項), 刑事補償請求權(同法 第28條), 國家賠償請求權(同法 第29條)의 규정을 두어 拷問의 한 形態로 不法拘禁·逮捕가 행하여지는 것을 防止하고, 適法한 拘禁하에서의 拷問등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다.

72. 이러한 憲法규정에 따라 하위 法規範인 法律과 規則들(laws and regulatory statutes)은 拷問防止를 위한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協約 第2條 第1項과 관련하여서는 拷問防止를 위한 주요한 制度등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 搜查從事者 注意事項

73. 刑事訴訟法은 搜查從事者들에 대하여 被疑者 또는 다른 사람의 人權을 존중하도록 하여 拷問등 不法行爲를 禁止하고 있다.

檢事, 司法警察官吏 기타 職務상 搜查에 관계있는 자는 秘密을 隱수하며 被疑者 또는 다른 사람의 人權을 존중하고 搜查에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刑事訴訟法 第198條).

74. 國家安全企劃部 職員에 대하여는 對共調査를 담당하는 관계로 拷問등 人權의 侵害行爲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여 國家安全企劃部 職員에 의한 拷問을 防止하고 人權을 侵害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의지 표현으로 職權濫用을 禁止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1994년 1월 5일에 법 개정을 통하여 國家安全企劃部 職員이 職權을 濫用하여 法律에 의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逮捕·監禁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權利行使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違反하였을 경우 다른 搜查公務員에 비하여 刑을 加重하여 處罰하고 있다(國家安全企劃部法 第11條, 第19條).